선박안전법 시행규칙





해양수산부(해사산업기술과) 044-200-5833, 583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선박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, 1, 3,>

- 1. "선령(船齡)"이란 선박이 진수(進水)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.
- 2. 삭제 <2010. 11. 18.>
- 3. "위험물산적운송선"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(散積)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.
- 4. "국제항해"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.
- 4의2."수면비행선박"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.
- 5. "검사기준일"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.

제3조(부유식 해상구조물) 「선박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0. 6. 17., 2013. 3. 24., 2020. 6. 17., 2021. 6. 30.>

- 1. 이동식 시추선 :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,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 는 작업에 종사함 수 있는 해상구조물(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)
- 2. 수상호텔,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(항구적 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)
-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
 - 가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기름
 - 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
 - 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에 따른 하수, 분뇨 및 하수도・공공하수도・하수처리구역의 유지・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(오염 침전물류)
 - 라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
 - 마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
 - 바.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
- 4.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

제4조(선박시설) 법 제2조제2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9. 4., 2020. 7. 30.>

- 1. 선체
- 2. 기관
- 3. 돛대
- 4. 배수설비
- 5. 조타(操舵)설비
- 6. 계선(繫船)설비 :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
- 7. 양묘(揚錨)설비 :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
- 8. 구명설비
- 9. 소방설비
- 10. 거주설비
- 11. 위생설비
- 12. 항해설비
- 13. 적부(積付)설비 :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 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
- 14.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
- 15. 전기설비

- 16. 원자력설비
- 17. 컨테이너설비
- 18. 승강설비
- 19. 냉동 ·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
- 19의2.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(이하 "항만건설장비"라 한다)
- 20.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
- 제5조(임시승선자)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 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,, 2012. 6. 26., 2013. 3. 24., 2018. 11. 20., 2020, 6, 17., 2025, 2, 27.>
 - 1.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
 - 2. 선박소유자(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) 및 선박정비, 화물관리,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
 - 3. 시험·조사·지도·단속·점검·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 는 사람
 - 4. 도선사, 운항관리자, 세관공무원, 검역공무원, 선박검사관,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
 - 5.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,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
 - 6. 삭제 <2018. 11. 20.>
 - 7. 삭제 <2010. 11. 18.>
 - 8.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
 - 9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(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 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축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
 - 나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
 - 다.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
 - 라. 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에 따른 화약류.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
 - 10.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(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
 - 11.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산업인력
- 제6조(적용선박) 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3호가목3)에서 "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0. 6. 17., 2013. 3. 24., 2018. 9. 4., 2023. 4. 12.>
 - 1.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
 - 2.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
 - 3.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
 - 4. 삭제 <2023. 4. 12.>
 - 5. 삭제 <2023. 4. 12.>
- 제7조(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)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3. 14., 2013. 3. 24.>
 -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- 제8조(적용완화)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11. 20.>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.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
 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
 - 2. 기상 여건의 악화, 풍랑(風浪)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

제9조(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)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(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),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. <개정 2008, 3, 14, 2013, 3, 24>

제2장 선박의 검사

- 제10조(건조검사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3, 14, 2013, 3, 24, 2015, 7, 15, 2018, 5, 1, 2019. 8. 20.>
 - 1.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{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(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 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에 건조검사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}
 - 2.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
 - 3.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(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사업장에 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- 4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
 -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・제2호・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 수선(滿載吃水線)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.
 - ③) 법 제7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15. 7. 15.>
 - 1. 선박검사관의 성명(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2.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
 - 3.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
 -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5. 7. 15.>
- 제11조(별도건조검사)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 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(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)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다.
 -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- 제12조(정기검사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 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 - 1.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(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)
 - 2.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(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)
 - 3.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
 - 4.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
 - 5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
 -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, 전자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
- 3 / 31 -

- 1. 선박검사증서
- 2.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
- 3.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
- 4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
- 5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

- 제13조(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여객선과 위 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.
 - 1.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: 별지 제5호서식
 - 2.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: 별지 제6호서식
 -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선 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야 한다.
 - ③) 법 제8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5. 7. 15.>
 - 1. 선박검사관의 성명
 - 2.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
 - 3.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
 - 4. 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.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 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4조(만재흨수선의 지정 등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흨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20, 6, 17.>

- 1. 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,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(乾舷): 별표 2(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)
- 2. 갑판에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선박 : 제1호 준용
- 3.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:

| 구분 | 적용되는 구역 | 건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해수 만재흘수선 | 해면 | 해수 건현 |
| 담수 만재흘수선 | 비중 1,DDD인 수면 | 담수 건현 |

-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(外板)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, 외판 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항해구역의 종류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평수구역(平水區域)
 - 2. 연해구역
 - 3. 근해구역
 - 4. 원양구역
 -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"이란 별표 4의 수 역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9. 4., 2025. 2. 27.>
 -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"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수역"이란 별표 5의 수 역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9. 4., 2025. 2. 27.>
 -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, 서쪽은 동경 94도,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 인 수역을 말한다.
 -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.
- 제16조(항해구역의 지정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, 선박의 구 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18.>
 -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(湖沼: 호수와 늪)·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15.. 2021. 6. 30.>
 -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·구조·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제17조(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)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.
 - 1.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

우

- 2.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
- 3.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
- 4.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
- 5. 접적지역(대연평도, 소연평도, 대청도,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)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 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 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,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2018. 11. 20., 2020. 6. 17.>

- 1.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 사람
 - 가.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, 하역 수리작업 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 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
 - 나. 선박의 입항,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, 운항관리자, 세관공무원, 검역공무원,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
 - 다. 1세 미만인 유아
- 2. 여객실, 선원실,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
- 3.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 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- 제19조(중간검사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 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, 전자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8, 3, 14., 2013, 3, 24., 2018, 11, 20.>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<개정 2010 11 18>

| 구분 | 종류 | 검사시기 |
|--|--------------|---|
| 가, 여격선, 원자력선, 잠수선, 고속선, 수면비행 선박(여격 용만 해당한다) 및 선령 3D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| 제1종 중간 검사 |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|
| 나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) 평수구역만을 향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(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) 2) 삭제 3)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4)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| 제1종 중간 검사 |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|
| | 제1종 중간 검사 |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시기준일 전 후 3개월 이내, 다만,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|
| 다. 가복 및 나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| 제2종 중간 검사 |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(정기검사 또는 제1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일은 제외한다) |

- 1. "고속선"이란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.
- 2, "선저검사"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. <개정 2018. 9. 4., 2025. 2. 27.>
- 1.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
- 2.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. 다만, 영 제2조제1항 제3호가목2)부터 4)까지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- 3.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

- 4. 삭제 <2010. 11. 18.>
-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,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(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)로 한다.
-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.
-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 (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적어야 한다.
- 제20조(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)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0. 11. 18., 2013. 3. 24., 2023. 4. 12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0. 11. 18., 2013. 3. 24.>
 -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.
- 제21조(임시검사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, 전자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 - 1. 선박검사증서
 - 2.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(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)
 - 3.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
 - 4.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
 - 5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
 -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9. 4., 2020. 6. 17., 2021. 6. 30.>
 - 1. 선박의 선박길이, 너비,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, 수밀성(水密性: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)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
 - 가. 상갑판 아래의 선체, 선루(船樓) 또는 기관실위벽(圍壁)의 폭로부(暴露部)
 - 나. 갑판실(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(頂部甲板)
 - 다.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
 - 라.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(閉圍)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(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)
 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
 - 가.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
 - 나.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
 - 다.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
 - 3. 타(舵)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
 - 4. 탱크, 펌프실,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·변경하는 수리
 - 5. 항만건설장비의 설치·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. <신설 2018. 5. 1.>
 -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1. 선박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 중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여객 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4조제8호, 제9호, 제12호 및 제14호의 선박시설로 한정한다.

- 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
- 3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 신설 · 증설 · 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
- 4.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 바꾸려는 경우
- 5.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
- 6.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,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을 변경하려는 경우
- 7.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
- 8. 삭제 <2018. 5. 1.>
- 9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(같은 조 제2호의 경우 검사시설 이 없는 섬에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시설이 있는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10. 삭제 <2018. 5. 1.>
- ⑤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 아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.>
- ⑥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.>
-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5. 1.>
-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,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 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.>
-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8, 5, 1.>
- 제22조(임시항해검사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0. 6. 17.>
 -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,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0. 6. 17., 2013. 3. 24.>
 -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0. 6. 17.>
 -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15. 7, 15.>
 - 1. 선박검사관의 성명
 - 2.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
 - 3.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
- 제23조(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6. 26., 2020. 6. 17., 2025. 2. 27.>
 - 1. 여객선(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) :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
 - 2. 원자력여객선 :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
 - 3.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: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
 - 4.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
 - 가.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
 - 나.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
 - 다.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
 - 라.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
 - 5. 원자력화물선 :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
 - 6. 액화가스산적운송선
 - 가.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 하는 선박: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
 - 나.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 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: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
 - 다.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: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
 - 7.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
 - 가.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 질을 운송하는 선박 :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
 - 나.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: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

- 8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 부속서 제7장제2 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: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 적합증서
 - 가.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
 - 나.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
 - 다.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
- 9.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
 - 가.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: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 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
 - 나.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: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 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
- 10.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: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 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
- 11.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: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 안전증서
- 12.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: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홀수선증서
- 13.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: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 안전증서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1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
- 2.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 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
-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 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1. 잠수선, 수중익선,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
- 2.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
- 3.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증 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.
-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15. 7. 15.>
- 1. 선박검사관의 성명
- 2.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
- 제24조(국제협약검사의 종류)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6. 17.>
 - 1. 최초검사 :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
 - 2. 정기검사 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
 - 3. 중간검사 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 는 검사
 - 4. 연차검사 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(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 일은 제외한다)에 받게 되는 검사
 - 5. 임시검사 :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

는 검사

- 제25조(국제협약검사의 신청)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 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 시기 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, 14., 2013. 3, 24.>
 - 1.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
 - 「전파법」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(여객선안전증서,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,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 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
 - 3.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함 수 있는 도면 및 자료(제23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)
 - 4.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(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 -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 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.
- 제26조(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)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.
 - 1.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, 법 제41조제2항,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 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
 - 3.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
- 제27조(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)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.
- 제28조(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 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 용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20. 6. 17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 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. <신설 2020. 617 >
 - 1.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
 - 2.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
 - 3. 건현 계산서 사본
- 제29조(도면의 승인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(변경)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 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 - 1.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
 - 2.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
 - 3.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. 다만,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 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4.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
 -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15.>
 - 1. 별표 8에 따른 증인(證印)
 - 2. 도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선박검사관의 성명
 - 3. 승인 날짜
 -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 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,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, 「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|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 른 선급법인(이하"선급법인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8. 20.>
- 제30조(검사의 준비 등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
- 1.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: 별표 9
- 2. 정기검사 준비사항 : 별표 10
- 3. 중간검사 준비사항 : 별표 11
- 4. 임시검사 준비사항 :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
- 5.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: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
- ② 삭제 <2018. 5. 1.>
- 제31조(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)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 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. <개정 2018. 5. 1.>
 -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 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.>
 - ③)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(효력시험만 해당한다), 제3 호마목, 제4호가목・다목,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. <개정 2009. 2. 13., 2018. 5. 1.>
 -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(入渠) 또는 상가(上架)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,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(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)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.>
 -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)부터 6)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연속하여 3회를 면 제할 수 없다. <개정 2018. 5. 1.>
 - 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,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 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15., 2018. 5. 1.>
 - 1. 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
 - 2.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(여객선은 제외한다)
 -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.
 - 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.>
- 제31조의2(선체두께의 측정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(鋼船)으로서 여 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,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은 별표 15의2와 같다.
 -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 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(이하 "두께측정지정업체"라 한다)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 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5. 1.]

- 제31조의3(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)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 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(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 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 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 - 1.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
- 2.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
-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(이하 "두께측정지정업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1.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
- 2. 제3항 각 호의 사항
-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다
-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 ·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-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 다.
-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5. 1.]

- 제32조(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)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"은 별표 15의4와 같다. <개정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. <개정 2020. 6. 17.>
 -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0. 6. 17 >
 - 1.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(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)
 - 2.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
 - 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- 가.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(이하 이 조에서 "복원성자료"라 한다)
 - 나.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: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복원성자료
 -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 박·조선(造船)·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15의5 제1호,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., 2018. 11. 20.> [전문개정 2015. 7. 15.]
- 제33조(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)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 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1.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
 - 2.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- 제34조(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)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, 같은 항 제1호 및 제 2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"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 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(국제협약검사증서)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1.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: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 류
 - 2.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: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 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
 - 3.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: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
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1. 제2항제1호의 경우 :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(국제협약검사증서)유효기간연장승인서
- 2.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: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

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

제35조

[종전 제35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<2018. 5. 1.>]

제36조(형식승인의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(이하 "형식승인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 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3. 7. 11.>

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 기관(이하 "지정시험기관"이라 한다)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 함하다)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
제37조

[종전 제37조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<2018. 5. 1.>]

제38조(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형식승 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지 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1., 2018. 5. 1.>

- 1. 사업체의 개요(연혁,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- 2. 삭제 <2011. 4. 11.>
- 3. 수입허가서 사본(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)
- 4.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,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
- 5.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(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 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)
- 6.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(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)
- 7.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 하는 장소에 제출하고,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.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 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 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.>
-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(이하 "시험성적서"라 한다)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제1항 각 호의 서류,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 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(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>
- 제39조(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)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
- 1.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2.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40조(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)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1. 4. 11., 2013. 3. 24.>
 - 1. 시험기관의 연혁, 설립 목적,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
 - 2.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[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]
 - 3.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·교정 관리계획서
 -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(다른 시험기관 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 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가. 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,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
 - 나. 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
 - 다.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
 - 5.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
 - 6.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(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경우로 한 정한다)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 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41조(지정받은 사항의 변경) ① 제40조제1항제2호, 제3호(검정·교정사항은 제외한다)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,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·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42조(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)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 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 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,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·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
[제목개정 2015. 7. 15.]

- **제42조의2(형식승인시험의 면제)**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. <개정 2008, 3, 14, 2009, 2, 13., 2010, 6, 17., 2013, 3, 24., 2018, 5, 1.>
 - 1.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
 - 가.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 용물건
 - 나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

- 2.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 - 가.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・검사기관의 시 험에 합격한 경우
- 나,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•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.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[제35조에서 이동 <2018. 5. 1.>]
- 제42조의3(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(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 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>

[제37조에서 이동 <2018. 5. 1.>]

- 제42조의4(형식승인증서의 갱신)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20.>
 - 1. 형식승인증서
 - 2.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5. 1.]

- 제43조(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)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. <개정 2018. 5. 1.>
- 제44조(검정의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(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 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3, 14., 2013, 3, 24., 2018, 5, 1.>
 - 1. 형식승인 품명·형식 및 규격(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2.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
 - 3.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, 부품,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>
 -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,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. <개정 2018. 5. 1.>
- 제45조(지도・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· 감독해야 한다. <신설 2020. 6. 17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 인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·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7.>
- 제45조의2(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 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, 2018. 5. 1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

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 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4.>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 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
[본조신설 2010. 2. 17.]

- 제45조의3(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4.>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 - 1.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적용할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채택
 - 2.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 - ③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
[본조신설 2010. 2. 17.]

- 제45조의4(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)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, 3, 24, 2018, 5, 1,>
 -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,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 24 >

[본조신설 2010. 2. 17.]

- 제45조의5(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)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- 가.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업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
 - 나.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- 다.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- 2. 형식승인증서 사본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법인합병의 경우: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
 - 2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 게 발급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7. 11.]

- 제46조(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)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.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 - ② 삭제 <2023. 7. 11.>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7. 11.>
 -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<신설 2023. 7. 11.>
- 제46조의2(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)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
 - 2.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
 -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·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.

- 1.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2.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(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 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)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.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 박의 회수·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.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,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・교환・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 47호의3서식의 회수·교환·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
- 2.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
- 3.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,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
- 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3, 7, 11.]

- 제47조(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. <개 정 2015. 7. 15.>
 -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. 다만, 시험・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·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 으로 본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 - 1. 절삭가공기계, 제봉설비,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
 - 2. 인장시험기,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
 - [제목개정 2015. 7. 15.]
- **제48조(지정사업장의 지정)**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 정사업장지정(변경)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5. 7. 15., 2018. 5. 1.>
 - 1. 사업장의 연혁 · 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
 - 2.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 - 3.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(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 려는 자로 한정하며, 이하 "제조설명서"라 한다)
 - 가. 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(이하 "인정대상물건"이라 한다)의 구조
 - 나. 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
 - 다. 제조공정
 - 라. 품질관리
 - 마. 시험 및 검사체계
 - 4.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(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 하며, 이하 "정비설명서"이라 한다)
 - 가.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
 - 나.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
 - 다.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
 - 라. 조립 후의 조정방법
 - 5.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(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)를 통하여 확인한 후,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5. 7. 15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 - 1.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 - 2.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

- 3.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, 품명, 규격 및 형식
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>
- [제목개정 2015, 7, 15.]
- 제49조(지정받은 사항의 변경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 인반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(변경)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5. 7. 15., 2018. 5. 1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 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5. 7. 15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- **제50조(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)**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 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(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)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 - 1. 지정사업장의 명칭,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
 - 2. 지정 품명・형식 및 규격(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3. 제조 또는 정비일자
 - 4.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,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.
- 제51조(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)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, 합격을 나타 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.
- 제52조(지도・감독)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・ 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5. 7. 15., 2018. 5. 1.>
- 제53조(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)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. <개정 2015. 7. 15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>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23. 4. 25.>
 - 1.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 - 2.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 -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4. 25.>
 - [제목개정 2015. 7. 15.]
- 제54조(예비검사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 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11. 20.>
 -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 개조・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 -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

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8. 11. 20.>

-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 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- 1. 시설명세서
- 2.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- 3.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
-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-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"선박"은 "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"로 본다. <개정 2018. 11. 20.>
-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,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. <개 정 2018. 11. 20.>
- (8)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. <개정 2018, 11, 20.>

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

- 제55조(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) 법 제23조제1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"란 바닥면적 이 7제곱미터(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)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. <개 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56조(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(이하 "컨테이너형식승인"이라 한 다)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3. 7. 11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 너지정시험기관(이하 "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"이라 한다)이 제출한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확인하고 이상 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- 제56조의2(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 - 1.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
 - 2.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 · 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
 -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23. 7. 11.>
 - 1. 시험기관의 연혁, 설립목적, 주요기능 및 조직
 - 2. 삭제 <2023. 7. 11.>
 - 3. 삭제 <2023. 7. 11.>
 - 4.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·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
 - 5.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
[제61조에서 이동 <2023. 7. 11.>]

제57조

[종전 제57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<2023, 7, 11.>]

- 제58조(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) 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 부한다)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7. 11.>
 - 1.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,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

- 2.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
-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 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,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.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-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,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(이하 "컨테이너시험성적서"라 한다)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컨테이너형 식승인시험합격증서,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7. 11.>
- 제58조의2(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)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3. 7. 11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 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
[제57조에서 이동 <2023. 7. 11.>]

- 제58조의3(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)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
 - 2. 최근 2년 이내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2년 이내에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갈음한다)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(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.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7. 11.]

- 제59조(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)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 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, 3, 14., 2013, 3, 24., 2023, 7, 11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 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23. 7. 11.>
 - ③)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,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 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
제60조

[종전 제60조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<2023. 7. 11.>]

제61조

[종전 제61조는 제56조의2로 이동 <2023. 7. 11.>]

- 제62조(지도・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지도·감독해야 한다. <신설 2020. 6. 17.>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・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・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7.>
- 제62조의2(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)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. 이 경우 컨테이너 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「재외공관 공증법」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 - 가.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업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
 - 나.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- 다.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- 2.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
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 - 1. 법인합병의 경우: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
 - 2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7. 11.]

- 제62조의3(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) ①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 - ② 삭제 <2023. 7. 11.>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7. 11.>
 -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<신설 2023. 7. 11.>

[제목개정 2023, 7, 11.]

[제60조에서 이동 <2023. 7. 11.>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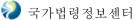
- 제62조의4(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)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컨테이너인 경우
 - 2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
 - 3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.
 - 1.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- 2. 컨테이너가 「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」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(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 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)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,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 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.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 로 인한 것이면,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.
 -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・교환・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 47호의3서식의 회수·교환·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.
 - 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
 - 2. 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

- 3.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,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
- 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3. 7. 11.]

제63조 삭제 <2023. 7. 11.>

- **제64조(안전점검의 기준)**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 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4. 12.>
 - 1. 정기점검방법 : 「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」 부속서 I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 점검
 - 2. 계속점검방법 : 「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」 부속서 I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 점검
 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23. 4. 12.>
- **제65조(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)**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·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3. 4. 12., 2023. 7. 11.>
 - 1. 회사의 연혁 · 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
 - 2. 「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」 부속서 I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 - 3.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(이하 "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
 - 4.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(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·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7. 11.>
- 제65조의2(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)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[본조신설 2023. 7. 11.]
- **제65조의3(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)**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2. 사업계획서
 - 3. 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,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-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
 - 가.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
 - 나. 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
 - 다.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
 - 라. 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
 -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,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.
 -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 - 1. 상호 또는 명칭
 - 2. 대표자의 성명
 - 3. 사업장 주소(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)
 - 4. 책임점검자의 성명



-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 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 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3. 7. 11.]
- 제66조(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 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「안전한 컨테이너 를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해야 한다.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 7. 11.]

- 제66조의2(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)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 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. [본조신설 2023. 7. 11.]
- 제67조(컨테이너의 안전조치)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, 제5조,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.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.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7. 11.>
 - 1. 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
 - 2.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
 - 3. 제거일시
 - 4. 제거방법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 매를 하되,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0. 6. 17., 2023. 7. 11.>
 - 1. 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
 - 2. 공매의 장소 및 일시
 - 3.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3. 7. 11.>
- **제68조(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)**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, 별지 제69호 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3. 7.
 -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 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20.>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 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 •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>

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

- 제69조(만재홀수선의 표시 등)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, 3. 14., 2012, 6. 26., 2013, 3. 24.>
 - 1. 수중익선, 공기부양선,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(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)
 - 2.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(帆船)
 - 3.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·해양사고구조·준설 또는 측량 에 사용되는 선박
 - 4.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
 - 5.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
 - 6.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

박

- 제70조(선박길이의 산정방법)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「선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 1항제9호에 따른다. <개정 2010. 11. 18., 2015. 7. 15.>
- 제71조(복원성기준 제외 선박)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, 3, 14, 2009, 2, 13, 2013, 3, 24, 2015, 7, 15, 2018, 5 1 >
 - 1.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.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. 부선
 - 2.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·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
 - 3. 부유식 해상구조물(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)
 - 4.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
- 제72조(무선설비의 설치)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09. 2. 13., 2010. 11. 18., 2013. 3. 24., 2015. 7. 15.>
 - 1.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
 - 2.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
 - 3. 호소·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
 - 4.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(경유지를 포함한다)가 2 해리 이내인 선박
 -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.
- 제73조(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) 법 제30조제1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. 다만,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 <개정 2008, 3, 14,, 2010, 6, 17., 2013, 3, 24., 2015. 7. 15.>
 - 1.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
 - 가.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
 - 나.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에 따른 유선. 다만.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 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.
 - 다. 삭제 <2010. 11. 18.>
 - 2.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
 - 3.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
 - 4.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,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
 - 5. 삭제 <2010. 11. 18.>

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

- 제74조(항해용 간행물의 종류) 법 제32조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(海圖) 및 조석표(潮汐表) 등 항해용 간행물"이란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 해서지 중 조석표・등대표・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. <개정 2021. 2. 19.>
- 제75조(항해용 간행물의 비치)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18., 2013. 3. 24.>
 -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.
 -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17.]

- 제76조(하역설비의 확인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.
- **제77조(하역설비의 확인신청)**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

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20. 6. 17.>

- 1. 데릭(Derrick)장치: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
- 2. 지브크레인(Jib Crane):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
- 3. 그 밖의 하역장치 : 제한하중
- 4.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: 제한하중
-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.
-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제78조(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.

-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1. 제한하중등확인서
- 2. 하역설비검사기록부
-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9조(화물정보의 제공)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 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5. 1.>

- 1. 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
 - 가. 화물명세
 - 나. 화물의 총중량(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)
 - 다. 화물특성
- 2. 산적화물인 경우
 - 가. 제1호 각 목의 정보
 - 나. 화물의 적하계수(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) 및 짐 고르기 방법
 - 다.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
 - 라.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
- 3.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
 - 가.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
 - 나.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
-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5. 1., 2020. 6. 17.>
- 1.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 는 방법
- 2.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·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 법(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 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8. 5. 1.>

[제목개정 2018, 5, 1.]

- **제80조(강화검사)**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2. 1. 3., 2013. 3. 24., 2018. 11. 20.>
 -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1. 선령 5년 미만의 선박
 - 2. 제1호 외의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
 -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- **제81조(예인선항해검사)**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 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 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6. 17.>

-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 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정기검사"는 "예인선항해검사"로, "선박검사증서"는 "예인선항해검사증서" 로 본다.
-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2. 1. 3., 2013. 3. 24., 2018. 11. 20.>
-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.
- 제82조(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)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(별도건조)검사증서, 제13조제1 항제1호・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,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,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.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,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, 제 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(국제협약검사증서)유효기간연장승인서,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,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,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,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 서,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,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,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, 제54조제 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,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,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 이너형식승인증서,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,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 인시험합격증서,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, 제65조제2항 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• 변경승인서,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, 제 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,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 선항해검사증서(이하 이 조에서 "증서"라 한다)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3, 14,, 2013, 3, 24,, 2015, 7, 15,, 2018, 5. 1., 2018. 11. 20., 2020. 6. 17., 2023. 7. 11.>
 - 1. 잃어버린 경우 : 사유서
 - 2. 헐어 못쓰게 된 경우 : 해당 증서
 -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 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 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
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

- 제83조(협정의 체결신청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 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1.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
 - 2. 임원의 성명
 - 3. 선박검사원의 수
 - 4. 정관 및 예산
 - 5.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
 - 6. 수수료의 기준
 - 7.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
 - 8.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제84조(현정기간의 연장)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현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 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 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85조(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)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 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86조(지도・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가 감독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·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·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8. 5. 1.]

제87조(검사신청 서식)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,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, 법 제8조제1항에 따 른 정기검사,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,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, 법 제10조제1항에 따 른 임시검사,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,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, 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,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,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,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,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, 법 제42 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 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·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제1항, 제25조제1 항, 제29조제1항, 제34조제2항, 제44조제1항, 제54조제1항, 제77조제1항,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 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, 6, 17.]

- **제87조의2(전자증서의 발급)**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(별도건조)검사증서, 제13조제1항제1호·제2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,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,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, 제23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・면제증서・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,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(국제협약검사증서)유효기간연장승인서,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,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,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,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,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 테이너검정증서,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, 4, 12.> [본조신설 2020. 6. 17.]
- 제88조(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)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(이하 "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. <개정 2020. 6. 17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88조의2(지도・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 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해야 하며,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· 감독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17.]

- 제89조(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)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(이하 "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. <개정 2020. 6. 17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

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
- 제89조의2(지도・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・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 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해야 하며, 해 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· 감독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, 6, 17.]

제8장 항만국통제

- 제90조(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)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.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"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20. 6. 17.>
- 제91조(특별점검)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"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1.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
 - 2.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 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
 - 3. 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·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 - 1. 항해정지명령서 : 별지 제80호서식
 - 2. 시정 · 보완명령서 : 별지 제81호서식

제9장 특별검사 등

- 제92조(특별검사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선박의 구조・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 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5. 1.>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검사대상 선박의 범위
 - 2. 검사사항
 - 3. 검사기간
 - 4. 검사준비사항
 - 5.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, 2018. 11. 20.>
 - 1. 선박검사증서
 - 2.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
 -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·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항해정지명령서 : 별지 제82호서식
 - 2. 시정 · 보완명령서 : 별지 제83호서식
- 제93조(재검사 등)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·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(재검정, 재확인)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3, 14., 2010, 11, 18., 2018. 5. 1., 2018. 11. 20.>
 - ② 삭제 <2017. 1. 2.>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 하여 재검사·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7. 1. 2., 2018. 5. 1.>

제10장 보칙

- **제94조(선급법인의 선박검사)** 법 제73조에서 "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"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 <개정 2008, 3, 14, 2013, 3, 24.>
- **제95조(선박의 결함신고)**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,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>
 -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8. 5. 1., 2020. 6. 17.>
 -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 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제96조(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)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·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 - 1. 항해정지명령서 : 별지 제89호서식
 - 2. 시정 보완명령서 : 별지 제90호서식
- **제97조(선박검사관의 자격 등)**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 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. 3., 2017. 10. 10., 2020. 6. 17., 2022. 6. 14., 2023. 7. 11.>
 - 1. 선체검사관
 - 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) 3급 항해사(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(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있는 사람
 - 나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대학이나 해양·수산 계열의 전문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)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
 - 다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다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라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)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기관검사관
 - 가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)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대학이나 해양・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

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- 2)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
- 다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라
 -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
 -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라.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1)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)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선체검사관 :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
- 2. 기관검사관 :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[여객선 및 특수선(수중익선, 원자력선, 잠수선, 공기부양선, 그 밖에 특수한 구조 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)은 제외한다]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 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,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. <개정 2010. 6. 17. 2013. 3. 24>
-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 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(이하 "항만국통제검사관"이라 한다)은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4.>
- 제97조의2(선박검사원의 자격)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(이하 "검사원"이라 한다)은 선체검사원, 기 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 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 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15., 2017. 1. 2., 2017. 10. 10., 2018. 5. 1., 2018. 11. 20., 2020. 6. 17.>
 - 1. 선체검사원
 - 가. 대학의 해양계・수산계・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전문대학의 해양계·수산계·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 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다.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
 - 라.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마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1)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3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
 - 4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. 기관(機關)검사원
 - 가. 대학의 기관・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

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- 나. 전문대학의 기관·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.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·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 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
- 라.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
- 마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1)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2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3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3. 전문검사원

- 가.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, 전기·전자, 통신, 생물, 환경, 화학, 화공,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 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1)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: 2년 이상
 - 2)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: 4년 이상
- 나.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, 전기·전자, 통신, 생물, 환경, 화학, 화공,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 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
-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- 1.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
- 2.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
-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,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7. 15.>
- 1. 선체검사원: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
- 2. 기관검사원: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
- 3. 전문검사원: 선박의 금속분야, 전기·전자, 통신, 생물, 환경, 화학, 화공, 물리 또는 해양학 분야에 관한 시설,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,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사
-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[여객선 및 특 수선(수중익선, 원자력선, 잠수선, 공기부양선,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)은 제외한다]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,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-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, 전기・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 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 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4.>
-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하며,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 6. 17.]

- 제97조의3(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)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 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·기관·선박운항, 화학 또는 화 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

- 2.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4.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: 실무수습 1 개월 이상
- 2.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: 실 무수습 2개월 이상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실무수습 6개월 이상
-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항제1호(항해, 기관,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)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: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
- 2. 제1항제1호(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 람으로 한정한다)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: 화학・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・연구・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·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
- 3.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: 「선박안전법」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
- 4.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: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
-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위험물 적재검사
- 2.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
- 3. 위험물 용기 · 포장검사
- 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

[본조신설 2019. 11. 20.]

제98조(청문)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다.

제99조(항만국통제 수수료)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 는 별표 37과 같다.

- 제100조(특별점검 수수료)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, 숙박비, 식비 및 현 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「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정부보관금 취급규칙」을 준 용하다.
- 제101조(규제의 재검토)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6., 2023. 7. 11.>
 - 1.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: 2017년 1월 1일
 - 2.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: 2017년 1월 1일
 - 3. 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, 시설 및 설비 등 기준: 2023년 7월 1일
 - 4. 제81조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: 2017년 1월 1일
 - 5. 삭제 <2020. 4. 6.>
 - 6.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: 2017년 1월 1일

[전문개정 2017. 1. 2.]

부칙 <제725호, 2025. 2. 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